

인천광역시 학생 칭찬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학생 칭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사회폭력과 학교폭력·각종 범죄와 탈선·학교 부적응 등으로 사회와 학교에서 일탈했다가 다시 건전한 사회와 학교의 구성원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로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칭찬받을 대상은 “학교에서 일탈하였다가 올바른 학교 구성원으로 거듭난 학생 중에서 모범적인 생활로 타의 귀감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과 “한 때의 잘못으로 범죄 등에 연류 되었다가 건전한 학교 구성원으로 돌아온 학생”으로 함(안 제3조)

나. 대상자는 학교의 장과 청소년단체의 장이 교육감에게 추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대상자는 연 1회 이상 시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칭찬받을 학생을 선정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칭찬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62, 팩스 032-440-87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학생 칭찬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학생 칭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때 사회에서 이탈했던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로 꿈과 희망을 회복하여,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상대상) 칭찬받을 대상은 제2조의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교에서 이탈하였다가 올바른 학교 구성원으로 거듭난 학생 중에서 모범적인 생활로 타의 귀감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2. 한 때의 잘 못으로 범죄 등에 연류 되었다가 건전한 학교 구성원으로 돌아온 학생

제4조(대상자 추천) 칭찬받을 후보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학교의 장과 청소년단체의 장이 제3조의 수상대상자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시상) 칭찬받을 학생은 연 1회 이상 교육장, 교육감이 선정하고 시상할 수 있다.

제6조(학생칭찬위원회) ① 칭찬받을 학생의 선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칭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육 및 학생선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명한 간사 1명을 위원회에 둔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